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개발사업 위탁받은 법인이
단순 대행업무만 한다면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으로 함

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 대행한 경우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 사업을 자기
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개발
비용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56, 2023.01.27

질 의

-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공사에
게 위탁하여 공사가 해당 사업을 단순히 대행한 경
우에는 개발보수만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개발비용
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발
급받는 것이나,

공사가 해당사업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개발
비용을 포함한 개발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며, 개발
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사 명의로 발급받
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
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
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
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
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부가가치세제과-182, 2023.03.08

질 의

-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
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여부

회 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
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
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
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
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
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
역주택조합에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이전하
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
로부터 신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
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
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규재산-3520, 2023.04.19

■ 질 의

- 도시개발법에 따라 집단환지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예정인 토지소유자들이 「주택법」 제11조의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으로서 신축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 환지처분 공고 이후 조합원* 명의 환지된 토지 소유권을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충족함을 전제함

■ 회 신

「주택법」제2조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고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신축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소득세법」제88조제1호가목의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지역주택조합에 이전하는 것은 같은 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를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299, 2023.05.17

■ 질 의

-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갑'(이하 "신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소재 외국법인 '*△△△△△-@@@@@ GMBH & CO. KG'에게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 관련 세무컨설팅 및 세무상담용역(이하 "쟁점서비스")을 제공하고, 대금 \$000을 '*△.3.27.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함
- ※ 본건 사전답변 신청은 신청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쟁점서비스가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

질의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외국법인에 전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상호 면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회 신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소재 외국법인에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세무컨설팅 및 세무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고,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